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2. 27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2. 8.(금), 강동구청장(총무과)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2. 12.(화) (의안번호 제82호)
-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 2. 25.(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요지

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양건모

나.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안 제19조)
- 2)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21조의3)
- 3)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2조)
- 4)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 등(안 제25조)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기 타
 - 1) 전문: 별첨
 - 2) 입법예고(2019. 1. 23. ~ 2019. 1. 24.)결과: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원안동의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9376호, 2018.12.18.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신규임용 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확대(안 제19조)
 - 3일 또는 6일 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1일로, 9일 이었던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2일로 조정하는 등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이는 연가일수 부족으로 계절휴가 및 경미한 사유로 필요한 연가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21조의3)

- 매년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 공지 및 연가사용 촉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연가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 총괄부서에서는 연가를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으로 인식을 전환하며, 연가를 권리로 인식하는 조직내 분위기를 유도하는 보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연가사용으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2조)

-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출시 휴직·퇴직·임용 등 신분상 변동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만큼 산식에 의거 공제하는 규정으로
- 해당연도의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며, 초과 사용시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함.

○ 공가 사유 확대(안 제24조)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시, 검역법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접종시 공가 허가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 우리나라 결핵 현황은, 발생률이 2015년 인구 십만 명당 80명에서 2016년 77명으로 감소하였고, 사망률은 2015년 인구 십만 명당 5.2명에서 2016년 5.2명으로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결핵 주요지표 모두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¹⁾.

- 또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환자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으며. 현재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을 비롯한 전세계 73개국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특별휴가 제도 개선(안 제25조)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실시(제4항),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게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실시(제5항), 자녀의 병원진료 또는 예방접종 동행시 휴가 실시(제13항)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의 소규모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소속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1) 출처 : 2018 국가 결핵관리 지침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